

中國의 環境影響評價法制와 法的責任

임종호*

《 차 례 》

- I. 序 論
- II. 中國의 環境影響評價法の 立法背景과 主要內容
- III. 中國의 環境影響評價節次와 制度의 特徵
- IV. 법적 책임
- V.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 序 論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입법계획으로 상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여러 차례의 조사연구와 논증을 거쳐 2002년 10월 28일에 환경영향평가법을 반포하고 2003년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과 시행은 중국의 환경입법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동 법은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범위를 과거의 단순한 건설사업으로부터 각종 계획까지 확장하였으며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하는데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의 실시는 정책과오로부터 초래되는 환경재난을 감소시키는데 유익할 것이다.

중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은 5장 3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주로 입법목적,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적용범위 및 시행원칙 등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계획의 분류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절차와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인데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였다. 주로 분류관리제도, 건설사업의 환경영향보고서의 내용,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자격증관리제도, 심사비준절차 및 후속감측제도 등 내용을 규정하였다. 제4장은 법률책임부분이고 제5장은 부칙이다.

* 경북대학교 박사 수료, 中國 烟台大学校 講師

중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종래 행정규칙형식으로 시행되던 환경영향평가제도¹⁾ 비해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현저한 특징이 있다. 첫째는 과거에 시행되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주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만 새로운 법은 계획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끔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공중참여에 관한 규정인데 과거의 조례에서는 비교적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제11조와 제21조에서 공중참여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전예방원칙을 구현하였으며 10여 년간 중국의 환경입법에서 가장 중대한 진전이다.²⁾ 비록 중국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행정법규형식으로부터 법률형식으로 발전되고 그 평가범위도 단순한 건설사업으로부터 사업계획으로 확장되는 눈부신 발전이 있지만 아직도 폭넓고 효과적인 공중참여를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나 지방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입법대응 등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II. 中國의 環境影響評價法の 立法背景과 主要內容

1. 立法背景

세계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된 것은 1969년에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서였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 원칙 14’는 “합리적인 계획은 개발 필요성과 환경보호 필요성간의 모순을 조정할 필수적 수단이다”라고 하여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암시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국제기구나 국제기관이 원조나 차관을 제공하는 전제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³⁾

세계은행은 1970년대 말부터 차관협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차관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무해행위”에서부터 “환경목표달성 지원”, “정책과 계획단계에서 환경문제 검토”의 단계로 정책을 발전시켜왔다.⁴⁾ 사실 중국의 환경영향평가법제도 특히 공중참여에 관한 부분의 발

1) 건설사업환경보호관리조례(建設項目環境保護管理條例)의 규정을 말하는데 이하에서는 조례라 한다.

2) 全國人大環境與資源保護委員會法案室 編, 『中華人民共和國環境影響評價法釋義』, 中國法制出版社, 2003, 1면.

3) 김동욱, 『환경영향평가』, 그루, 2004년, 2면.

전은 세계은행과 아세아개발은행의 자금원조정책에 크게 영향받게 된다.⁵⁾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7년에 여러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경험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지구환경보전이념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원칙에 대해 정부간 합의결정문을 공표하였고,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행동강령을 정했다.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원칙 17’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 국가 당국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적 제도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의 환경영향평가법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이런 국제적인 흐름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이론 특히 환경권이론에 관한 논의의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은 과거에 시행되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초위에 발전되고 성립되었다. 중국에서는 1978년에 中共中央에서 국무원의 「環境保護工作滙報要點」(환경보호사업 보고요점)에 관한 보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사업을 실시할 의향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⁶⁾ 1979년 9월에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시행) 중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식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획경제체제의 영향 하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일부는 사회의 발전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무원에서는 새로운 행정법규형식으로 1998년에 「건설사업환경보호관리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 제2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중국에서 건설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기본적인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당해 조례의 제정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대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례의 결점도 뚜렷한 바, 여전히 생태와 환경보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예를 들면 법률과 비교할 때 본 조례는 행정규칙에 속하여 제도의 실행에 비효과적이고 또한 평가대상에 계획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공중참여에 관한 규정도 소극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제9기 전국인대⁷⁾에서 환경영향평가영향평가법을 입법계획에 상정하였으며 2002년에 정식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본 법률의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실시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4) World Bank(1999), “Environment Matter, Annual Review on the Environment”, World Bank, Washington, D.C., pp.8-10.

5) 李艷芳, 『公衆參與環境影響評價制度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3, 221면.

6) 本文編輯委員會, 『中華人民共和國環境影響評價法手冊』, 銀聲音像出版社, 2002, 104면.

7)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약칭으로서 한국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2. 立法過程에서의 論議

환경영향평가법은 1998년부터 초안작성을 시작하여 2002년 10월에 통과되기 까지 4년간의 시간을 소요하였다. 4년 동안 반복적인 토론과 변론 및 논증을 거쳐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등 나라의 실지고찰을 통하여 제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논쟁은 아주 첨예하였다.⁸⁾

1) 시기상조설

환경영향평가는 서방발달국가의 법률이며 중국은 아직 발전도상 국가로서 현재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각 분야의 의견을 청구하고 전인대상무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자주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현대화건설의 순조로운 건설을 보장하고 심각한 생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법률제정을 결론지었다.

2) 실천경험부족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한 경험이 부족하므로 아직 법률로 제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조사 연구한 결과 세계상 많은 나라 예하면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등 국가에서 오랜 기간동안 전략환경평가의 역사가 있으며 실시한 결과도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서부대개발하는 동안 일부 건설 예하면 靑藏公路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있고 실천경험의 다소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의거로 될 수 없다.

3) 어떠한 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범위에 넣을 것인가

일부 기관에서는 그들이 작성한 계획이 이미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일부 상응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경제건설과정에서 계획의 부당으로 인해서 생태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시계획에서는 비교적 일찍 환경문제에 주의를 돌려 環境保護篇章이라는 章을 따로 규정하였으나 다수는 汚水處理나 綠化와 같은 내용이며 도시규모나 발전방향 특히 산업구조, 에너지의 청결사용, 도시발전과 주위의 생태조화 등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각종 계획에 대하여 환경평가를 진행하여 源流에서부터 환경문제를 고려하도

8) 全國人大環境與資源保護委員會法案室 編, 전게서, 5면.

록 하는 입법취지는 전국인대상무위원회의 인정을 받았다. 따라서 국민경제에 관련한 계획들에 대해서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법률에서는 규정하였다.

4) 정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법률규정을 두는 것을 반대하는 견해

청구의견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정책평가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책의 불안정은 생태환경문제가 악화되는 중요한 원인이므로 초기단계에서부터 제한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국무원 일부 기관에서는 정책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불확정성도 크고 또한 정책제정이 명확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면 실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법안작성위원회에서는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먼저 계획만을 환경영향평가범위에 넣고 정책평가는 포함하지 않지만 일부 지방에서 선택하여 시행한 후 경험을 축적하고 조건이 성숙되면 보충하여 평가범위에 포함시키는 걸로 결정하였다.⁹⁾

3. 環境影響評價法의 主要內容

1) 評價範圍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에서는 “본 법 제9조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계획을 작성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내의 기타 海域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본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본 법 제7조제8조의 규정¹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계

9) 全國人大環境與資源保護委員會法案室 編, 전게서, 7면.

10) 제7조 : 국무원 관련 기관 또는 區를 설치한 市級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주관하여 작성하는 토지이용의 관련 계획, 區域·流域·海域의 건설·개발이용계획을 반드시 계획작성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여 당해 계획의 환경영향에 관한 篇章 또는 說明을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의 환경영향에 관한 篇章 또는 說明은 반드시 계획이 실시됨으로 인하여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분석·예측평가를 하여야 하며 불리한 환경영향을 예방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책과 조치를 제출하여 계획초안의 구성부문으로서 함께 계획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기관은 환경영향에 관한 篇章 또는 說明을 작성하지 않은 계획초안을 심사하지 않는다.

획의 구체적 범위는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무기관에서 국무원 관련 기관과 함께 정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다"라고 규정하였다.

2) 환경영향보고서의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는 각각 계획과 건설사업의 환경영향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계획의 환경영향보고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당해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인하여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예측평가, (나) 불리한 환경영향을 예방하거나 경감하는 대책과 조치, (다) 환경영향평가의 결론.

동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의 환경영향보고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개요, (나) 건설사업주변환경현황, (다) 건설사업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예측 또는 평가, (라) 건설사업의 환경보호조치 및 기술·경제적 논증, (마) 건설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경제손익분석, (매) 건설사업에 대하여 환경감측을 실시할 데 관한 건의, (사) 환경영향평가의 결론 등. 이외에 水土保全에 관한 건설사업은 水行政主管機關의 심사동의를 거친 수토보전방안도 갖추어야 한다.

3) 평가 시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시기는 당해 전문계획이 초안작성이 완료되고 심사기관에 신청하기 전이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건설사업환경보호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기는 건설사업의 타당성연구단계(可行性研究階段)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타당성연구가 필요 없는 건설사업은 건설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철도, 교통 등 건설사업은 심사권한이 있는 환경행정주무기관의 동의를 거쳐 기초설계완성전에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¹¹⁾

제8조 : 국무원 관련 기관 또는 區를 설치한 市級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그가 주관하여 작성하는 工業·農業·畜牧業·林業·能源(에너지)·水利交通·城市·旅游(관광)·自然資源開發에 관한 전문계획(專項規劃)에 있어서 반드시 당해 전문계획초안이 신청되어 심사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전문계획을 비준하는 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열거한 전문계획 중 지도성 계획은 본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1) 건설사업환경보호관리조례 제9조.

4) 작성주체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와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의 작성주체에 대한 규정은 다르다.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의 작성주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동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국무원 관련 기관 또는 區를 설치한 市級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기관 등 행정기관이다. 초안작성과정에서 부당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계획을 작성하는 기관에서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면 본인의 계획행위를 본인이 평가하는 식으로 되어 환경평가의 질을 보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제3의 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연구토론 끝에 이러한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부행정기관의 계획행위는 건설사업자의 건설사업과 비교해 볼 때 그 성격이나 지위 및 기능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의 경우와 같이 제3의 기관에서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계획은 국가기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계획에 대한 환경평가의 대부분을 정부기관에서 자체로 실시하는데 예하면 캐나다와 같은 경우이다.¹²⁾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의 환경영향보고서의 작성주체는 사업자와 제3의 중개기관이다. 동법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아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대행기관에 대해서 엄격한 자격심사를 행한다.¹³⁾

5) 공중참여

전에 시행되던 건설사업환경보호관리조례에서는 공중참여에 대해 아주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동 조례 제15조에서는 “건설기관에서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소재지의 관련 기관이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공중참여의 방식, 공중참여의 단계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시행에

12) 全國人大環境與資源保護委員會法案室 編, 상게서, 제33면.

13) 제16조 : ... 건설기관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보고서·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이하 환경영향평가문건이라 統稱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9조 : 위탁을 받아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기관의 심사테스트를 거친 후 자격증서를 발급받은 후 자격증서에서 규정된 등급과 평가범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종사하며 그의 평가결론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자격조건과 관리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기관에서 정한다 ... 이하 생략.

제20조 : 환경영향평가문건 중의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는 환경영향평가자격이 있는 상응한 기관에서 작성해야 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건설기관의 건설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해서는 아니된다.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하지만 새로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제5조, 제11조, 제21조에서 공중참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동 법 제5조에서는 “국가에서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또는 공중이 적절한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에 참가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전문계획의 작성기관은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주민의 환경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반드시 계획초안을 신청하여 심사비준하기 전에 논증회·청문회 또는 기타 형식을 강구하여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또는 주민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서 비밀보호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작성기관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또는 주민의 환경영향보고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사에 교부한 환경영향보고서에 의견수렴 또는 불수렴의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는 “국가에서 규정한 비밀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사받기 전에 논증회·청문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하여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건설기관에서 심사에 교부한 환경영향보고서에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거나 또는 불수렴의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에 조례에서 시행되던 공중참여에 대한 규정보다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이 많이 발전되었지만 공중참여의 시기, 참가방식 및 관련 제도의 미비(예를 들면 공중참여에 필수적인 환경정보공개제도) 등은 아직 제도 실효성을 많이 저해하고 있다.

Ⅲ. 中國의 環境影響評價節次와 制度의 特徵

1. 中國의 環境影響評價節次

1) 대상사업선별(分類篩選)

대상사업선별(分類篩選)이란 미국의 스크리닝(screening)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로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은 환경에 대한 영향의 크기에 따라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분류관리를 실시한다.¹⁴⁾ 이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의 환경영향

14)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

평가는 환경에 대한 영향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며, 따라서 세 가지 부류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해야 한다.

첫째,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동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둘째,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하여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분석 또는 전문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동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셋째, 환경에 대한 영향이 아주 적어 환경영향평가가 불필요할 때에는 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제2항 제3호). 동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분류관리목록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기관에서 제정하고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무기관에서 새로운 분류목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는 1999년 4월 19일에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반포한 「건설사업환경보호분류관리목록(시행)을 공포할 데 관한 통지」에서 규정한 분류목록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요강(環境影響評價大綱)의 작성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사업은 반드시 먼저 환경영향평가요강을 작성해야 한다(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요강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¹⁵⁾ 환경영향평가요강은 미국의 스코핑제도와 유사한 데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행하는 주요 평가범위의 확정에 관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요강은 작성된 후 건설기관에서 심사권한이 있는 환경행정주무기관에 제출하며 심사비준 후 환경영향보고서의 주요한 의거로 된다.

3) 건설기관과 평가실시기관의 계약체결

건설기관에서는 심사기관의 환경영향평가요강에 대한 심사의견과 요구에 근거하여 보고서작성기관(제3의 중개기관)과 환경영향보고서 작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4) 환경영향보고서의 작성과 공중참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참여의 시기는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비준받기 전이다. 그리고 공중참여의 형식은 주로 논증회나 청문회형식이다. 그리고 반드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또는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불수렴의 설명을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동법 제21조). 하지만 공중참여의 시점이 대상사업의 선별이나 평가

15)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문제의 집행에 관한 통지」 三의 규정.

요강의 작성시기가 아닌 환경영향보고서가 작성된 후 심사비준 받기 전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5) 심사비준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은 건설기관에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심사권한이 있는 환경보호행정주무기관에 제출하며 건설사업이 그 업무주관기관이 있는 경우 당해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를 그 업무주관기관의 豫審을 거친 후 심사권한이 있는 환경행정주무기관에 제출한다(동법 제22조 제1항). 심사기관은 환경영향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환경영향보고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환경영향등기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내리고 건설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동법 제22조 제3항).

6) 재심사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이 심사비준 된 후 건설사업의 性質·規模·地点採用되는 生産工藝(생산공정) 또는 오염을 防治하거나 생태파괴를 防止하는 조치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건설기관은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을 다시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한다(동법 제24조 제1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이 심사비준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환경영향평가문건은 原 심사기관에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原 심사기관은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건설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제2항).

7) 후속평가

건설사업의 시행과정에 심사된 환경영향평가문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건설기관은 환경영향의 후속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원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사기관과 건설사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자료를 비치해두어야 하며 원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사기관도 건설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영향의 후속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2. 中國의 環境影響評價制度의 特徵

1) 分類管理

환경영향평가법과 「건설사업환경보호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의 환경영

향평가에 대하여 분류관리를 실시한다.¹⁶⁾ 건설사업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중대한 영향, 경미한 영향 또는 영향이 아주 적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각각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및 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사업의 중점도 이러한 종류에 따라 다른데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서는 評價重點도 합리적인 분포, 입지선정 및 총량통제 등으로 하며 확장 또는 기술개조사업에 대하여서는 평가사업의 중점도 프로젝트가 시행된 전후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여 기존의 오염처리조치를 강화하고 환경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2) 평가대상이 건설사업에 편중된 점이다

중국의 경제력이 비교적 薄弱하여 대규모의 경제건설을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현대계의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주로 건설사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이며,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나 법령의 제정과 집행은 아직 평가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평가자격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중국에서는 평가기관의 자격심사제도를 실시하여 평가기관의 법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법률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심사비준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증서를 발급하는데 평가증서는 甲級과 乙級으로 나눈다. 甲級證書는 國家環境保護總局에서 심사하고 발급하며 당해 증서를 소지한 기관은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乙級證書는 省·市級環境保護局에서 심사하고 발급하는데 당해 증서를 소지한 기관은 해당 지역의 범위 내에서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999년까지 환경영향평가자격증서를 소지한 기관은 604개이며, 2000년 1월까지 환경영향평가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은 11,000명 가까이 된다.¹⁷⁾

4) 기본건설절차에 포함되는 것이다

「건설사업환경보호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은 건설사업에 대하여서는 계획기관에서는 設計任務書의 심사를 하지 않으며 토지관리기관에서는 수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기본건설절차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¹⁸⁾

16)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건설사업환경보호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

17) 陸書玉 編著, 『環境影響評價』, 高等教育出版社, 2003, 14쪽 참조.

18) 陸書玉 編著, 상계서, 14쪽 참조.

IV. 법적 책임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제4장에서 본 법을 위반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다. 아래에 계획작성기관, 계획심사기관, 건설기관, 건설사업의 심사비준기관, 환경행정주무기관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려 한다.

1. 계획작성기관의 법적 책임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서는 “계획작성기관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허위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또는 실직행위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가 현저하게 사실과 어긋날 때에는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에 대하여 상급기관 또는 검찰기관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行政處分)을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획작성기관이라 함은 본 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 의무가 있는 관련 계획을 작성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 관련 기관이나 구를 설치한 시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또는 관련 기관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법적 책임은 주로 행정처벌을 말하는데 行政監察法, 國家公務員暫定條例 등 법률이나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주로 警告, 記過, 記大過, 降級, 撤職, 開除(제명) 등 행정처벌형식을 말한다.

2. 계획심사기관의 법적 책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에서는 “계획심사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의 篇章 또는 說明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은 계획초안, 법에 따라 환경영향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첨부하지 않은 전문계획초안을 위법하게 비준하였을 경우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또는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에 대하여 상급기관이나 검찰기관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획심사기관이라 함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계획에 대하여 심사권한이 있는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중국 법률 또는 법규에서는 수많은 각종 유형의 계획을 규정하였으며 부동한 계획에 대하여 부동한 기관에서 심사비준한다. 예하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의 區規劃은 도시인민정부에서 심사비준해야 하며 따라서 도시인민정부가 본 조

항에서 규정한 계획의 심사비준기관이 된다.

본 조항에서 말하는 행정책임형식은 제29조에서 말하는 행정책임형식과 거의 같다.

3. 건설기관의 법적 책임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에서는 “건설기관이 법에 따라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심사에 교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본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문건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거나 다시 심사테스트할 것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건설을 시행하였을 경우 당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심사비준할 권한이 있는 환경행정주무기관에서 건설을 정지하고 기한 내에 절차를 거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기한을 초과하여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만원(중국화폐) 이상 20만원(중국화폐) 이하¹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의 직접적인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관은 환경에 대하여 영향이 있는 건설사업을 신축하거나 확장하는 업주를 말한다. 환경에 대하여 영향이 있다함은 고정투자방식으로 실시하는 모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건설활동을 말하는데 국유경제, 城鄉集體經濟, 주식제, 외자형식이나 개체경제 또는 기타 부동산 경제유형의 개발활동을 말한다.²⁰⁾

책임형식은 주로 건설정지를 명하거나 절차이행을 보충하게 하거나 벌금을 내게 하고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을 주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4. 건설사업의 심사비준기관의 법적 책임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서는 “건설사업이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환경영향평가문건이 법에 따라 비준되지 않고 심사기관의 임의로 건설사업을 비준하였을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에게 상급기관 또는 검찰기관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행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건설사업의 심사비준기관이라 함은 건설사업의 심사비준절차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심사비준할 책임이 있는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관리

19) 한화로 환산하면 700만 이상 3000만원 이하이다.

20) 全國人大環境與資源保護委員會法案室 編, 전게서, 110쪽 참조.

절차에 따르면 건설기관은 법에 따라 사업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본 조항에서 말하는 심사비준기관은 사업건의서를 심사비준하는 기관이 아니라 최종 당해 사업의 착공을 비준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적 책임형식은 주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로 나누어지는데, 형사책임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면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주로 형법 제397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속한다. 관련 형법규정에 따라 국가사업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公私財産이나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상황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²¹⁾

5. 평가서대행기관의 법적 책임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서는 “위탁을 받아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환경영향평가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무책임하거나 사실을 허위적으로 날조하여 환경영향평가문건이 사실과 어긋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자격을 부여한 환경보호행정주무기관에서 그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자격증서를 취소하며 수취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탁을 받아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 함은 본 법 제19조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그의 등급과 평가범위 내에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책임형식으로는 평가대행기관의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자격증서를 취소하고 벌금을 과하거나 형사책임 등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6. 환경행정주무기관의 법적 책임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서는 “환경행정주무기관 또는 기타 기관의 사업인원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소홀하여 위법하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을 비준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행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1)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97조의 규정 참조.

여기서 환경행정주무기관 또는 기타 사업인원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심사비준할 권한이 있는 환경행정주무기관이나 본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과 해양환경보호법의 규정22)에 따라 해양프로젝트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심사비준할 권한이 있는 해양행정주무기관을 말한다.

책임형식으로는 행정처벌과 형사책임이 있다.

V.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평가대상사업의 제한

환경영향평가법은 전에 행정법규형식으로 시행되던 「건설사업환경보호관리조례」보다 그 평가대상의 범위를 계획까지 확장하여 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안에 포함되었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반복적인 토론을 거쳐 결국 삭제되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아직 정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계획에 대한 평가만으로도 얼마만큼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여 먼저 일부 지방에서 시행한 후 경험을 축적하고 시기가 성숙되면 다시 보충해 넣는다고 결론지었는데 큰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²³⁾ 구체적인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은 더 중대하고 정책결정의 실패는 결국 경제적인 비용차원에서도 만회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새만금사업이나 천성산터널을 관통하는 고속철도사업 또는 참여정부가 주도하는 신행정수도건설정책 등 한국의 사례에서도 정책실패가 국민경제 전반 또는 국민에게 주는 손해가 얼마나 큰지 잘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지금 한창 올림픽건설과 서

2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2항 : 海洋工程建設項目的 海洋環境影響報告서의 심사는 「중화인민공화국해양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해양환경보호법 제43조 제1항 : 해안공정건설사업의 기관은 반드시 건설사업의 가능성연구단계에서 해양환경에 대하여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자연조건과 사회조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입지 선정하며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는 해양행정주무기관에서 심사의견을 제출한 후 환경보호행정주무기관에서 심사비준한다.

23) 환경영향평가법(초안) 제4조에서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구역개발이나 산업발전, 자연자원개발의 정부규범성문건을 제정하거나 국토계획, 토지이용총체계획, 도시계획, 구역·유역·해역개발이용계획 및 공업·농업·임업·수리·교통·관광·자연자원개발의 전문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환경영향평가법(초안)에 관한 설명」(全國人大環境與資源保護委員會法案室 編, 전개서, 148쪽에 수록)

부대개발정책 그리고 삼협댐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에 대한 평가가 시급한 시점이다.

2. 대체안의 부재와 평가시기의 문제

1) 대체안의 부재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대체안에 대한 규정이 없다.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 제102(2)(C)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영향보고서(EIS)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대체안(alternatives)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 대체안에는 행위를 하지 않는(no action) 것도 포함된다.²⁴⁾ 하지만 중국의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는 계획과 건설사업의 환경영향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체안에 대한 규정이 없다. 어떤 계획이나 건설사업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정책결정기관과 공중에게 많은 선택여지를 제공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처럼 환경영향보고서의 내용에 제안 행위와 그 대체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할 것을 규정하여 될수록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상황을 모두 고려할 수 있게 하여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2) 평가시기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의 환경영향평가는 당해 전문계획이 초안작성이 완료되고 심사기관에 신청하기 전이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건설사업환경보호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건설사업의 타당성연구단계(可行性研究階段)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타당성연구가 필요 없는 건설사업은 건설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철도, 교통 등 건설사업은 심사권한이 있는 환경행정주무기관의 동의를 거쳐 기초설계완성전에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의 환경평가절차에 미국의 기초환경평가(EA)나 한국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평가시기를 계획의 경우 초안작성과 함께 실시하고 건설사업의 경우 가능성검토단계보다 앞선 사업건의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하며 본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24) 42 U.S.C.§4332(2)(C), 40 C.F.R.§1502.14.

3 공중참여제도의 개선과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입법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와 제11조, 제21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과정에 공중참여에 대한 선언적인 규정과 계획과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공중참여의 범위, 절차, 방식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전에 시행되던 것보다 진보한 면이 있지만 아직도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적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공중참여의 시기가 늦고 공중참여의 절차와 방식도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이다. 미국의 경우 공중참여는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참가절차나 방식도 행정절차법을 통한 법적 근거가 있어 실효성이 있는 반면, 중국의 공중참여는 관련 규정을 보면 대체로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중참여에 관한 문서열람기간이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입법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²⁵⁾ 그리고 중국의 공중참여의 형식으로 청문회형식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청문회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청문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청문규정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공중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소유한 정보를 공개할 때 관한 정보공개입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지방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지방환경입법의 개선

미국의 경우 지방차원에서의 환경입법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환경정책법과 함께 지방차원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환경문제를 대처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며 일부 주의 환경법은 작은 NEPA라고도 불리운다.²⁶⁾

일본에서도 1976년 川崎市에서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차원의 환경영향평가법보다 빠르게 제정되었다.²⁷⁾ 중국의 경우 장기간의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체제 속에 지방의 적극성이 크게 속박받아 국가차원의 법이 제정된 후 지방차원의 입법이 시행되었지만 그나마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환경문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지방입법을 강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대안책으로

25) 중국은 아직까지 정보공개법이나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26) James F. Berry & Mark S. Dennison, *The Environmental Law and Compliance Handbook*, McGraw-Hill, 2000, p.85.

27) 浅野 直人, 『環境影響評價の制度と法』, 信山社, 1998, 70면.

서 한국과 일본의 지방화분권개혁을 참조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효과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거나 지방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지방차원에서의 WTO가입을 허용하거나 교토의정서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지방의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 법률에서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입법청문에 관한 조례를 정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부대개발지역에서는 대규모의 건설사업이 한창인 만큼 타 지역보다 앞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안지역에 위치한 지역들에서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보다 엄격한 환경보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

5. 환경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확대와 환경공익소송의 도입

중국에는 아직 환경권에 대한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지만 고도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환경과피를 억제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권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적 성격에 관한 명시적 규정과 환경권의 사권성을 인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국의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²⁸⁾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본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환경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환경공익소송을 도입하고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입법적 대응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11조에 규정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受理範圍에 대하여 열거식 규정이 아닌 개괄식 규정을 두어 법원의 사법심사의 재량과 창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사실 미국에서의 환경법의 발전은 법원의 역할과 적극적인 사법개입과 무관하지 않다.²⁹⁾

주제어 : 중국,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계획, 법적 책임, 공중참여, 대안

28) 행정소송법 제2조: 公民·法人 및 기타 組織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구체적 행정행위로 그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면 본 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9) Roger W. Findley & Daniel A. Farber, *Environmental Law*, West, 2004, p.23.

【참 고 문 헌】

全國人大環境與資源保護委員會法案室 編, 『中華人民共和國環境影響評價法釋義』, 中國法制出版社, 2003.

本文委員會 編, 『中華人民共和國環境影響評價法實施手冊』, 銀聲音響出版社, 2002.

李艷芳, 『公衆參與環境影響評價制度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

呂忠梅, 『環境法學』, 法律出版社, 2004. 9.

蔡守秋 主編, 『環境法學教程』, 科學出版社, 2003. 8.

김동욱, 『환경영향평가』, 그루, 2004. 6.

淺野 直人, 『環境影響評價の制度と法』, 信山社, 1998.

James F. Berry&Mark S. Dennison, The Environmental Law and Compliance Handbook, McGraw-Hill, 2000.

Roger W.Findley&Daniel A.Farber, Environmental Law, West, 2004.

【Abstr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Legal Responsibility in China**

Lin, Zong Hao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issu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Legal Responsibility in China.

In 2002,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Law finally passed through the 4 year's hard efforts. This was the great success in China's environmental legislation field. The paper started with the legislation background and mainly discussed content of the EIS and legal responsibility.

EIA systems in China utilize the screening methods to decide the activities subject to the three EIA categories of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Environmental Impact Report Form, and Environmental Impact Registration Form. In Practice, The main part of EIA law is the construction project EIA. There are no stipulations on the fulfillment of the EIA to the decision making of economic development plans which might have serious impacts on the environmental. As a next step, China will extend the EIA to the policy fulfillment,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ning, and genuinely realize the combination betwee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efficiency, to satisfy the strategy of consistent development.

EIA systems in China have still many tasks to be resolved. For example, no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no alternatives etc.. EIA systems in China has launched in 1979s. But its development han been very slow until now. The government placed the greatest priority on economic development rather than environmental protection.

Key Words : China, EIA, scoping, project, legal responsibility, public participation, alternatives.
--